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18 선고 2022가합533029 판결 [주식매매대금 청구]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섭

피 고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이성은]

변 론 종 결 2023. 4. 6.

판 결 선 고 2023. 5. 18.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피고 B은 161,250,000원, 피고 C는 129,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4.

17.부터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 1) 원고는 2010. 7. 토공사업,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2012. 3. 28. 대표이사 및 이사직에서 모두 사임한 사람이다.
- 2) D의 2011. 12. 31.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된 위 회사의 주주구성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이하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된 아래 D 주식 29,025주를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

주주명	주식수	지분율
원고	29,025	45%
E	9,675	15%
F	16,125	25%
G	9,675	15%

- 3) F은 D의 이사였던 사람으로, 2012. 3. 28. 그 직에서 사임하였다. E은 F의 친형이고, 2012. 3. 28. D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2012. 4. 17.자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원고와 피고들 명의의 각 2012. 4. 17.자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갑

제1호증의 1, 2, 이하 ‘이 사건 각 계약서’라고 한다).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상호: D

위 법인의 주식을 다음과 같이 양도양수합니다.

1. 양도인 성명: 원고
2. 양수인 성명: 피고 B / 피고 C
3. 양도주식수: 16,125주 / 12,900주
4. 1주의 금액: 10,000원
5. 매매한 금액: 161,125,000원 / 129,000,000원

다. D의 경영권 이전

1) 원고는 2012. 3. 28. D의 대표이사 및 이사직에서 사임하였고, 같은 날 E은 D의 대표이사로, 피고 C는 이사로 각 취임하였으며, D의 본점 소재지가 ‘부산 기장군 H’로 변경되었다.

D의 2012. 12. 31.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된 위 회사의 주주구성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주주명	주식수	지분율
E	19,350	30%
피고 B	16,125	25%
피고 C	12,900	25%
I	16,125	20%

2) J은 2012. 9. D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E은 2013. 3. D의 대표이사 및 이사직에서 모두 사임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이 사건 각 계약서(갑 제1호증의 1, 2)에 관하여 피고들은 증거의견을 ‘부지’로 밝히고 있으나1), 위 계약서에 날인된 인영의 동일성은 다투고 있지 않고, ‘E이 D

인수에 필요하다며 피고들의 명의를 빌려 쓰기로 했다'라는 피고들의 주장 자체로도 E의 동생인 K이 피고들의 의사에 기하여 위 각 계약서에 피고들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들 명의의 이 사건 각 계약서의 진정성립은 인정된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처분문서인 이 사건 각 계약서에 따라 피고들은 이 사건 주식의 양수인으로서 원고에게 피고 B은 161,250,000원의, 피고 C는 129,000,000원의 주식 양수도대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 1)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들의 의사가 합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의사표시 상대방의 관점에서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이해하였을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9다267204 판결)
- 2) 이 사건 각 계약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고, 계약 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상대방은 그 처분문서에 기재된 자로 이해하는 것이 계약 상대방의 관점에서 합리적인 의사해석일 것이다.
- 3)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든 증거에 갑 제5호증, 을 제1, 4~6, 9,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을 이 사건 주식 양수도 거래의 당사자로 인정할 수 없는 아래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

가) 원고 대리인의 인식

(1) 원고는 이 사건 각 계약서가 작성된 경위에 관하여 「원고는 평소 회사의 각종 사무를 담당하던 F에게 '이 사건 주식을 3억 원에 처분할 의향이 있다'라고 밝히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F이 원고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이 사건 각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짐작되는데, 그 당시에는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다가 F, E, J과의 분쟁 과정에서 위 각 계약서의 존재를 처음 알게 되었다」라면서 마치 F이 원고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이 사건 각 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한 것처럼 주장하다가도,

종국적으로는 이 사건 각 계약서 기재 내용과 같은 계약체결 사실을 요건으로 하는 이 사건 청구에 이르고 있다²⁾. 그렇다면 원고는 적어도 이 사건에서는 F에게 이 사건 각 주식의 처분 권한을 위임하였고, F이 그 수권범위 내에서 이 사건 각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2) 원고의 대리인인 F이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계약 상대방을 누구로 인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F은 이 법원 2022가단5100243호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E이 종합건설면허가 있는 회사를 인수하고 싶다고 하였고, F의 소개로 원고와 E이 2012. 3. 원고 보유 주식과 D의 경영권을 3억 원에 인수하기로 합의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고(을 제5호증 2~3, 8면), 이 사건 각 계약서의 당사자에 E이 아니라 피고들이 양수인으로 기재된 경위에 관하여 묻자, 「이 사건 각 계약서 초안을 누가 준비해왔는지, 피고들을 양수인으로 기재한 이유가 무엇인지 기억나지 않는다. 합의 당시에는 원고, E, F만 있었다」라고 답변(을 제5호증 6, 9면)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E과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양도에 관한 합의를 하였고, F은 E을 위 주식의 양수인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원고가 F에게 이 사건 각 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지시하거나 F이 피고들 명의의 이 사건 각 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을 보고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그 무렵 원고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원고가 그 문서의 존재도 알지 못한 이 사건 각 계약서에 표시된 피고들을 이 사건 주식의 양수인으로 이해하였다거나 그렇게 믿고 이 사건 주식을 처분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나) 이 사건 주식 처분 후 원고의 행동

원고는 2012. 3. 28. 스스로 D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고, E이 그 무렵 새로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2012. 4. 5. D의 법인등기부에 위 각 사임등기 및 취임등기가 등재되었다. 원고는 2014년 F, E 등을 업무상횡령 내지 배임으로 고소하면서, 검찰에 「F, E은 2014. 4. 5. 원고로부터 D의 채권채무를 모두 인수하는 조건으로 회사를 3억 원에 인수하였다. 그런데 F, E은 원고에게 투자금을 정산해주고 있지 않다.」라고 주장하였다. 그렇다면 원고는 2012. 3~4. E을 이 사건 주식의 양수인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D의 대표이사가 변경되어 E에게 위 회사의 경영권이 이전된 경위도 원고의 위와 같은 인식에 부합한다고 보인다.

다) 이 사건 각 계약서 작성 시점 및 경위

2012. 4. 17. 이 사건 각 계약서 외에도 G와 E 사이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을 제6호증의 1), F와 I 사이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을 제6호증의 2)가 작성되었고, 위 각 계약서 기재에 따라 D의 2012. 12. 31.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가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2012. 4. 5. D의 법인등기부에 E의 대표이사 취임등기가 경로되었고, 위 나)항의 형사사건에서도 원고는 E에게 경영권이 양도된 일자를 2012. 4. 5.로 특정하고 있는데, 이미 E에게 D의 경영권이 이전되어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양수도 거래가 종결된 것으로 짐작되는 2012. 4. 5.로부터 12일이 지난 뒤에야 위 각 계약서들이 작성된 별다른 이유를 찾기 어렵다.

한편 원고는 위 나)항의 형사사건에서 「D 설립 당시 F이 원고가 과점주주가 되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지분을 분산하는 것이 좋다고 하여 형식상 F 등이 D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주주명부를 작성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원고가 100% 지분을 갖고 있다」라고 주장하였다. 원고를 비롯하여 E 등 D 관련자들은 F에게 각종 회사 사무를 일임하고 F이 실제로 어떤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는지에 관하여 소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F이 그간 D과 관련하여 업무를 처리해온 관행에 비추어 보면, F은 이 사건 주식이 E에게 양도된 이후에 E의 납세의무 회피 등을 위하여 실제 법률관계와 무관하게 이 사건 각 계약서를 비롯한 다수의 문서를 사후적으로 작성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라) E 또는 J의 인식

E은 이 법원 2017고정3316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제가 회사를 일단 제 앞으로 인수했다가 다시 J에게 넘겨주는 그런 걸로 했다. F하고 원고가 회사를 저한테 인수해가라고 했다」라고 증언하였다. J도 위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E에게 회사를 소개해달라고 해서 D을 소개받았다. D은 2012. 3. 28. 원고로부터 E에게 형식적으로 인수되고, 그 이후 본인이 2012. 9. 21. 인수한 다음에 사명을 바꾼 것이다」라고 증언하였다. E을 원고와 J 사이의 거래를 중개한 자로 볼 것인지, 혹은 E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고 이를 다시 J에게 처분한 것으로 평가할 것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각 증언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E 또는 J이 원고로부터 본인들이 D의 경영권을 인수하였다고 생각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4) 따라서 앞서 본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찬우, 판사 안성민, 판사 박진옥

1) 피고들의 2022. 8. 24.자 준비서면 4면

2) 원고는 재판부의 석명에도 이 사건 각 계약서의 진정성립에 관하여 명확한 의견을 밝히지 않았는데, 원고가 일견 상충되어 보이는 주장을 하는 이유는 원고가 ‘피고들, E, J 중 누군가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였으므로 그 양수인이 원고에게 주식 인수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는 입장 하에,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각 계약서에 날인한 피고들을 상대로, 이 법원 2022가단5100243호로 제기된 사건(원고는 이 법원 2022가단5100243호로 주위적 피고를 J, 예비적 피고를 E으로 하여 주식 인수대금 3억 원 중 일부인 3,1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에서는 주위적으로 J, 예비적으로 E을 상대로,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는 동일한 주식 인수대금을 청구하고 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